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8
----------	-----

2022년 9월 2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8월 26일, 박철성 의원(찬성자: 39명)
-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 다. 상정일자 :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년 9월 21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철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서울시에 소재한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협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4개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서남, 탄천) 중 난지물재생센터가 현재 서울시 관내가 아닌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어 조례 적용의 불합치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시 관내에 있지 않더라도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협의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안 제15조)
- 난지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구성 시 협의 주체를 안 제15조에 맞추어 조정하고자 함. (안 제16조)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물재생시설 중 난지물 재생센터가 서울시 관내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어,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15조에서 시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협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 검토

- 먼저, 안 제15조는 본문 중 시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조례 제2조1호1)에 따른”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물재생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주민협회의의 의견청취) 시장은 <u>서울시에 소재한</u>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때는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5조(주민협회의의 의견청취) ----- <u>제2조제1호에 따른</u> ----- ----- -----.

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재생시설"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하수도법」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2. - 6. (생략)

현행	개정안
1. 복합악취농도 측정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현행과 같음)

○ 이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재생시설 중 난지물재생센터가 서울시 관내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어 난지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이 조례상 제외되는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조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하겠음.

[표 2] 난지물재생센터 일반현황

(2018.12.31.)

구분	주요내용
위치	- 본 처리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현천동) - 유 입 펌 프 장 :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12 (상암동 1536) - 상암오수펌프장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111
부지면적	- 937,928㎡
처리구역	- 하 수 : 1개시 7개구 (용산,은평,서대문,마포구 전 지역, 종로,중구,성동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지역) - 정화조 : 9개구 (종로,중구,용산,서대문,마포,강남 서초구 전 지역, 영등포구 일부지역) - 분 료 : 6개구 (종로,용산,은평,서대문,마포,영등포)
처리방법	- A2o
시설용량	- 하 수 : 86만㎡/일 - 정화조 : 4,500kl/일
처리효율	- 유입수 : BOD=125.4mg/l , SS=84.5mg/l - 방류수 : BOD=6.8(10)mg/l , SS=3.1(10)mg/l

○ 다만, 조례 제15조에서 제19조에 규정된 주민협의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9.11.11.일 개정·시행(서울특별시조례 제 4886호)되었고,

- 난지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가 2013.1.1.일에 구성(물재생시설과 -17112, 2012.12.14.)되어 2022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불일치 사항을 상당 기간 인지하지 못한 채 난지물 재생센터 주민협의회가 구성·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조례에 근거하지 못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됨.
- 참고로, 4개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탄천, 서남) 주민협의회 구성 및 예산지원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 서울시 물재생센터별 주민협의회 구성 및 예산지원 현황

구분	구성현황(명)		예산지원 현황(천원)		
	최초 구성시기	현황(2022.9.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
중랑	2012.1월	10(전문가 2)	10,000	15,000	15,000
난지	2013.1월	10(전문가 2)	10,000	20,000	20,000
탄천	2012.1월	8	8,000	16,200	20,040
서남	2012.1월	8	8,000	16,200	20,040

- 다음으로, 안 제16조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때 물재생시설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였던 것을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관할 구역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표 4]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주민협회의 구성) 주민협회의는 시장이 해당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제16조(주민협회의 구성)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 -----.

현행	개정안
<p>1.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같은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대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중 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p> <p>2. 제1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이공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 연구기관의 이공계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또는 이공계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명</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 다만, 안 제16조제1호에서도 주민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의회”를 “지방의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 5]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6조(주민협의회 구성) 주민협의회는 시장이 해당 <u>구청장</u> 및 <u>구의회</u> 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p> <p>1.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같은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대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중 <u>구의회</u>가 추천한 주민대표</p>	<p>제16조(주민협의회 구성)</p> <p>----- <u>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u>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제16조(주민협의회 구성)</p> <p>(개정안과 같음)</p> <p>1. -----</p> <p>-----</p> <p>-----</p> <p>-----</p> <p>-----</p> <p>-----</p> <p>----- <u>지방의회</u> -----</p> <p>-----</p>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 개정안 제16조제1호에서 주민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관할 구역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를 고려하여 “구의회”를 “지방의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 안 년 월 일 : 2022년 9월 21일

제 안 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의안 번호	관련 118
----------	-----------

1. 수정이유

- 개정안 제16조제1호에서 주민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관할 구역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를 고려하여 “구의회”를 “지방의회”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 가. 안 제16조제1호에 “구의회가”를 “지방의회가”로 함. (안 제16조제1호)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제1호 중 “구의회가”를 “지방의회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6조(주민협의회 구성) 주민협의회는 시장이 해당 <u>구청장</u> <u>및 구의회</u> 의장과 협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이내 에서 구성한다.</p> <p>1.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 정동에 3년 이상 거주 하며 지역사회 발전 을 위해 헌신하고 봉 사하는 지역주민으로 서 같은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 대주 20명 이상의 추 천을 받은자 중 <u>구의 회가</u> 추천한 주민대 표</p>	<p>제16조(주민협의회 구성) ----- ----- <u>지방자치단 체장 및 지방의회</u> -- ----- ----- -----.</p> <p>1. (현행과 같음)</p>	<p>제16조(주민협의회 구성) (개정안과 같음)</p> <p>1. ----- ----- ----- ----- ----- ----- ----- ----- <u>지방 의회가</u> ----- -</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본문 중 “서울시에 소재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구청장 및 구의회”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구의회가”를 “지방의회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대 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중 <u>구의회가</u> 추천한 주민대표</p> <p>2. 제1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 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이공계 관 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 ·공립 연구기관의 이공계분야 연 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만 해당) 또는 이공계 분야의 지식 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 는 전문가 2명</p>	<p>----- ----- <u>지방의회가</u> -----</p> <p>2. (현행과 같음)</p>